

# 84년 石油政策의 虛와 實

在 石 俞

歲暮이다.

1984년도 서서히 그 幕을 내리려 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올해 일어난 主要事案을 烏瞰하고 그 흐름을 살펴보는 것도 전혀 무의미한 일은 아닐 것이다.

— 5월 21일 흐르무즈해 협동쇄위기에 대비한 「비상시 석유수급관리대책」이 마무리 되었다. 이는 비상시의 석유수급체계 설정과 수요감축방안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비상대책의 일환으로 8월 19일부터 8월 22일까지 서울시내 자가용 승용차에 대해 운행제한 연습이 있었다. 이 연습은 비상시에 우리 국민이 감내하여야 할 불편을 평상시에 体感하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기도 하였다.

— 4월 27일 동자부는 「L.P.G 충전소 및 유통구조 현대화 일반지침」을 확정, 발표하였다. 용기충전소의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고 검사장비를 갖추며, 안전시설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각 가정에는 용기를 2개씩 비치하고 계획배달제를 실시하여 서비스를 개선하라는 요지였다.

이 지침에 따라 기존 유통업체는 합동으로 성남과 김포에 2개소의 현대화 충전소를 설치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동자부에 제출하였다.

5월 26일 동자부는 석유가스 유통협회에 세부 추진계획을 6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충전소 현대화사업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일 경우에는 기존 유통업체 보호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에 놀란 유통업체는 새로이 사업계획서를 작성, 7월 10일 제출하였으나,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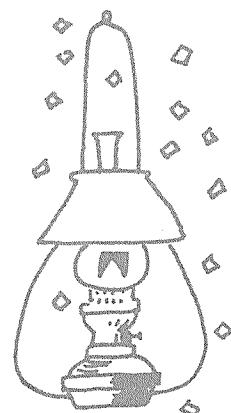
9월 17일 유통협회는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再提出. 24개 충전소 신설에 1천 5백억원이 소요된다는 방대한 내용이었다.

두달여 후인 11월 29일 동자부는 사업계획서를 냈건 안냈건 관계없이 기존 유통업자가 충전소 현대화사업을 하려고 할 경우 신속히 허가 처리하라는 지침을 시·도지사에 시달하였다.

충전소현대화지침이 확정된 후 실제로 7개월 만의 일이었으며, 기존 유통업체에 대한 우선권 부여시 한인 85년 6월을 7개월 남겨두고서의 조치였다.

— 7월 1일 동자부는 현물시장에서 소요원유의 20% 이상 구입할 경우 공시가격과 구입가격과의 차액을 기금으로 징수하겠다고 고시하였다. 실질적인 현물시장 이용제한조치였다. 그러나 11월 26일 이 방침은 변경되어 일단 85년 3월말까지 시한부로 제한조치가 해제되었다.

— 8월 6일 동자부는 20일의 원유비축을 의무화하는 조정명령을 발표하고 추가로 6일분의 비축량에 대하여는 비축기금융자조치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정유회사는 소요원유의 26일분에 해당하는 원유를 의무적으로 보유



하게 되었다. 미처 준비가 덜 된 일부 정유회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촌극을 빚기도 하였다.

그러나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원유비축 의무에 관한 조정명령과 융자고시는 해제되고 융자금을 85년 2월 28일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연체이자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이 각 정유회사에 발송된다.

×            ×            ×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는가. 분명히 전체를 貫流하는 基調가 있고 始終을 잇는 脈絡이 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몇 가지 事案을 놓고 석유정책의 根幹을 더듬는 無謀를 범하기 보다는 85년 신년사에 담긴 동자부장관의 所信을 회상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이다. 是

는 非와 통하고 主張은 反主張과 軌를 같이하는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발췌가 갖는 전체문맥의 誤導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주요부분을 실제표현 그대로 옮겨 본다.

…에너지정책을 밀고 나가는데 있어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자.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위해서는) 첫째 우리의 정책결정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이든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든 대화의 통로를 열어야 하며, 둘째 결정된 정책은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언제 정책이 변할지 모르는 마당에서 믿고 따르는 사람만이 손해를 보았다는 현상은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정책은 충분한 기간을 주어서 수용태세를 갖추도록 해야한다.

…(정부가) 에너지 가격으로 비판을 받는 것은 과연 운명적인가?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는 체제도 자유주의 경제를 근본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경쟁의 원리를 정면 부정하는 본질적 충동이 일어난다. 공급자간에 상호경쟁이 있을 때만이 소비자의 구미를 맞추고 가격이 경쟁의 과정에서 견제될 수 있다.

…결과론적으로 민간기업이 가격을 결정하는 체제하에서 수요시장과 원가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여력이 있으면 안 올릴 수도 있고, 올린다고 해도 경쟁기업의 눈치를 보아가면서 먼저 올리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 심리이다. 또 가격인상은 탄력적으로 시기를 나누어서 인상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가격을 인상할 때는 인상요인을 누적시켜서 그것도 각 부처와의 행정적인 협의로 장시간을 보내고 한꺼번에 과거를 소급시키는 것이 관례다.

×            ×            ×

세해에 미결사항으로 이월되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換差相對策이다. 「민간기업이 가격을 결정하는 체제」가 아닌 것이 분명한 현실에서, 환차손 대책이 시기를 逸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과연 「누적적으로 소급하여」 인상요인을 해소할 것인가.

84년에 있었던 정책의 흐름과 소신의 사이에서 그 판단은 의외로 손쉬울지도 모른다.\*

〈이 글에 담긴 의견은 필자의 私見임을 밝혀둔다.〉